

권익위 제도개선 법적근거 및 추진시스템

□ 주요기능 및 법적근거

- 권익위법에 따라 **고충민원 및 부패를 유발**하는 불합리한 법령,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**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**을 할 수 있음

※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 ✓ **고충민원을 유발**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(법 제12조)
 ✓ 공공기관의 **부패방지를 위한**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렴·권고(법 제12조)

- 제도개선을 위해 **실태조사, 이행실태 확인·점검, 대통령 보고, 국회·지방의회 제안, 공표** 등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음

- 자료 등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(법 제12조 및 제29조)
 - 권고 반영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·점검(법 제27조 및 제52조)
 -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의 공표권(법 제53조)
 - 제도개선사항의 대통령 또는 국회 제안권(법 제77조)

□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시스템

- **과제발굴, 현장 실태조사, 전문가 자문**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소관부처와 협의 후 **전원위 의결**로 소관부처에 권고함
- ※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, 총리실(규제개혁위원회), 행안부 등은 각 부처로부터 과제들을 제출받아 관리기능을 수행하지만, **권익위 제도개선**은 **과제발굴, 실태조사, 개선안 마련**을 직접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음
- 권고과제는 **반부패 경쟁력 평가, 현장·서면 점검(매월)**을 통해 관리하고 **국무·차관회의 보고, 국회제안**으로 그 이행을 독려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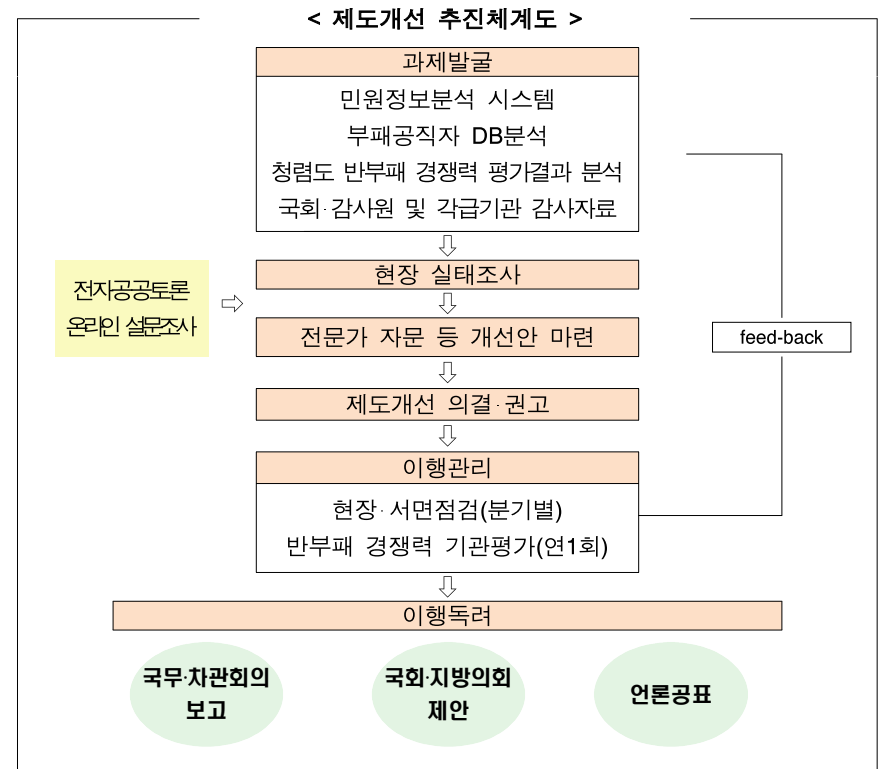
참고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근거 및 체계

- 권익위법에 따라 **고충민원 및 부패를 유발**하는 불합리한 법령,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**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**을 할 수 있음

※ 근거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7조, 제47조

※ 부처간 제도개선 기능 차이

- 권익위 : **과제발굴, 실태조사, 개선안 마련을 직접 수행**
- 총리실, 행안부 등 : 주로 각 부처에서 과제를 제출받아 관리기능 수행



- 권고과제는 **반부패 경쟁력 평가, 현장·서면 이행점검**을 통해 사후 관리하고 **국무·차관회의 보고, 국회제안**으로 그 이행을 독려함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3.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4.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- 5.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·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

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제2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
- 2.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

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
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제53조(공표)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
- 2.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
- 3.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

제77조(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)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